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김소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78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김소영 의원(1명)

찬 성 자:경만선, 김소양, 김제리,

김창원, 김춘례, 김태호, 김화숙, 노승재,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유 용, 이성배, 이호대, 최 선, 최영주, 황규복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경기종목의 다양화와 경기인 증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반 경기부와 장애인 경기부의 형평성을 위해 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 경기종목의 경기인을 45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자 함(안 제3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총 245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다)"를 "총 26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60명을 포함한다)"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④ 경기인	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④
은 총 <u>245명(장애인 경기 종목</u>	<u>260명(장애인 경기 종목</u>
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다)의	의 경기인 60명을 포함한다)
범위 안에서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	
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문서번호

2021020500000014

미첨부사유서(1호)

요 청 인 : 김소영 의원 담당: 조도형 과장

민향식 팀장

노이안 예산분석관

접 수 일: 2021.02.05

회 신 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10-2326-1900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 1. 비용발생 요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3. 미첨부 사유
-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경기부 설치 등) 제4항 내용 중 경기인의 수를 <u>총 245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45명을</u> 포함한다)에서 <u>총 26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60명을</u> 포함한다)으로 개정하여, 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15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의 추가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同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339,010천원 (연평균 467,802천원)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을 기준으로 선수단 인원 수를 적용하여 1인 평균비용 산출

(※ 1인 평균비용 : 51,978천원 = 21년기준 민간위탁금 2,339,000천원 / 인원수 45명)

- 직장운동경기부 신설팀 창단에 따른 경기인 수는 매년 3명씩 증가
- 증가(안) :'21년(3명)→'22년(3명)→'23년(3명)→'24년(3명)→'25년(3명) 〈총 15명〉
- 연간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되며 인건비는 경기인 성과에 따라 연도별로 증감이 있어 고정금액 적용 (※ 물가 상승률 등 미반영)
- 추계기간 : 시행 후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 발생 예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2.339.010천원(연평균 467.802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_	_	-	-	-
세출	경기부 설치 등 (제3조제4항)	155,934	311,868	467,802	623,736	779,670	2,339,010
	소계(b)	155,934	311,868	467,802	623,736	779,670	2,339,010
	총 비용(b-a)	155,934	311,868	467,802	623,736	779,670	2,339,01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예산분석팀장 민향식

분석관(주무관) 노이안

10 010-2326-1900

e-mail: 78901@seoul.go.kr